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가. 금융투자업규정 (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제한 완화 등)

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금융투자업규정 (2021/6/30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며, 프로젝트투자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을 현행 70%에서 50%로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 반영(제1-9조)

—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온라인소액투자 발행가능업종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, 「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」을 준용하여 프로젝트투자가 가능한 분야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당 항을 삭제

□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제한 완화(제1-9조)

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프로젝트투자시 사업의 수익지분 중 중소기업 비중을 70%에서 50%로 완화

□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삭제(제3-66조)

—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법령상 위임 없이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